

## 제규정 입안 및 심의 요청서

기본정보	규정명	사회봉사활동운영지침	규정번호	3-4-03	
	소관부서	리케이온스쿨	담당자	이경은	
	구분	규정 <input type="checkbox"/>	규칙 <input type="checkbox"/>	지침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시행세칙 <input type="checkbox"/>
	형식	개정 <input type="checkbox"/>	제정 <input type="checkbox"/>	폐지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추진배경 (개정/제정/폐지 배경)		봉사활동 교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			
주요내용		2022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발 시 수강인원 저조 및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반복되어 폐지 결정되었음			
붙임		3-4-3. 사회봉사활동 운영 지침(2013.3.1.개정, 2017.3.1.개정)			

\* 규정과 시행세칙이 동시에 개정 또는 재정되는 경우 한 번에 작성

**제출일 : 2025.1.14.**

**부서장 : 이 민 수 (서명생략)**

## 사회봉사활동 운영 지침

개정 2013.03.01.

개정 2016.03.01.

개정 2017.03.01.

**제1조(목적)** 인간사랑, 자연사랑, 문화사랑의 교육이념으로 설립된 우리 대학에서 미래를 위한 전문적인 학습과정 못지않게 사회에 나가 지도자적인 자질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조력하는 폭넓은 인간으로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봉사활동 신청 자격)** ① 봉사활동교과는 본교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.

**제3조(봉사대상기관)** ①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시설

② 학교 의뢰기관으로 우리 대학에서 봉사활동 대상기관으로 의뢰 요청한 기관.

③ 해외봉사 주최하는 NGO 기관 및 교회, 농활 등의 단체활동 가능한 농어촌마을.

**제3-1조 (삭제)**

**제4조(봉사활동의 범위)** ①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단체의 봉사활동

②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활동

③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

④ 사회봉사협의회의 봉사활동

⑤ 농어촌 및 해외 봉사활동, 교내에서의 봉사활동

⑥ 문화재 보호활동, 환경보호활동, 각종 캠페인 자원봉사활동

⑦ 헌혈증서(본인) 기증

⑧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

**제5조(인정학점)** 16시간 봉사활동 시 1학점으로 인정한다. 단, 성적평가는 제8조를 따른다.

**제6조(봉사활동 과목개설 및 인정기간)** ①봉사활동은 1, 2학기 모두 개설한다.

② 봉사활동 기간은 수강 해당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1년 전부터 적용한다. 단, 입학 이후 기간만 인정한다.

③ 2항에도 불구하고, 09학번~12학번까지는 봉사활동 인정기간에 관계없이 재학기간 중 봉사활동 시간을 모두 인정한다.

**제7조(봉사활동 인정시간 및 활동안내)** ① 봉사활동 인정시간 : 1일 최대 교내 2시간, 교외 5시간 인정 (단 교내봉사활동은 성격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. 세부지침은 별첨 참조)

② 봉사활동 과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정기간 내 16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. 이때 교내는 최대 6시간까지 인정되며, 교외는 1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.(※ 교내 봉사의 경우 6시간이 봉사활동의 필수조건은 아님)

- ③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6조와 같이 1년 단위로 누적되어 운영되므로 기간 내에 16시간의 봉사활동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누적된 봉사활동시간은 0시간으로 처리되며 이월되지 않는다.
- ④ 헌혈의 경우 6조와 같이 1년 단위로 누적되어 운영되며 헌혈증 제출 시 1회 4시간(교외)으로 인정하며 최대 3회 제출까지 인정된다.
- ⑤ 해외봉사의 경우 상황과 기간에 따라 해당 지도교수가 개별적으로 심사한다.

**제8조(성적평가)** 봉사활동은 패스제로 운영하며, 아래의 항목을 충족해야 학점이 인정된다.

- ① 인정기간 내 16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천
- ② 최종보고서 제출
- ③ 활동평가의 평균점수 60점 이상

**제9조(장애 학생 봉사활동)** ① 기본적인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 단, 봉사활동 기본 시간 이수가 어려울 시 해당 스쿨 원장 재량 하에 간단한 스쿨봉사 활동 및 헌혈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- ② 장애 학생의 봉사활동 실시 범위 및 시간은 스쿨원장의 판단에 따른다.
- ③ 장애 학생은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학생에 한한다.

**제10조(봉사활동 신청 및 확인 절차)** ① 교내 봉사활동 시 학생은 각 스쿨 및 본부에서 신청하고 활동 후 ‘교내 봉사활동 확인서’에 활동 내용 기재 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종합정보시스템(CK4U) 봉사활동 메뉴에서 봉사활동 내역을 입력한다.

- ② 교외 봉사활동 시 학생은 봉사활동 완료 후 ‘교외 봉사활동 확인서’에 활동내용 기재 후 기관 담당자의 확인과 평가를 받아서 종합정보시스템(CK4U) 봉사활동 메뉴에서 봉사활동 내역을 입력한다.
- ③ 교외 봉사활동의 경우 기관 별도의 확인서 양식으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기관 담당자의 평가내용은 봉사활동 확인서에 직접 받도록 한다.
- ④ 봉사활동 과목을 신청한 학기 기말고사 전 봉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안에 봉사활동 결과보고서와 발급받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.
- ⑤ 지도교수는 제출받은 확인서와 학교 종합정보시스템(CK4U) 봉사활동 메뉴에 등록된 지도학생들의 봉사활동 내역을 비교·확인하여,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한다.
- ⑥ 학생 개별적으로 봉사실적 관리와 제출을 하도록 하며, 봉사실적 관련 서류의 분실로 인한 모든 사항은 학생이 책임을 진다.

**제11조(해외봉사 및 기관 이외의 단체봉사활동)** 단체봉사활동은 5명 이상을 말하며 해외봉사 및 기관 이외의 단체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.

**제12조(순수봉사)** 순수봉사란 학점 취득에 필요한 16시간 외에 검증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.

① 졸업 시 순수봉사 100시간 이상자 중 우수자 00명 선발 시상할 수 있다.

**제13조(봉사활동 증명서 발급)**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신청은 16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시간을 완료한 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.

**제14조(재해발생시의 책임)** ① 학생 개인이 사회봉사활동 기간 중 부상 등을 입거나 봉사대상 기관의 재산 등에 손해발생 시에는 학생 본인이 비용부담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
② 단체 봉사활동 시에는 대표자가 필히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기타사항)** 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청강 교내 봉사활동 영역

유형	내용	최대봉사인정/기간	
학교행사 보조	입시 및 면접시 보조, 졸업식 및 입학식 행사보조, 신입생 O.T 준비, 청강 갤러리 보조, 학교 축제, 점등식 등	2시간 /1일	
스쿨행사 보조	자료정리, 기자재 관리, 운반 및 청소, 과제전, 졸업전 준비 및 정리, 연구소 보조 등	2시간 /1일	
기 타	학교 알리미 : 대학 홍보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대상 학교 홍보 및 학교 안내 등, 기타 학교를 알리는 활동	2시간 /1일	
	강의도우미: 수업도우미, 실습도우미	2시간 / 학기당	
	장애학생 도우미 (예외규정)	유급 도우미 :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참여	2시간 / 학기당
		무급 도우미 : 장애학생 학습 및 이동보조, 대학생활 안내 등	8시간 / 학기당

### 청강 교외 봉사활동 영역

유형	내용	최대봉사인정/기간	
사회복지 시설 • 공공기관 • 학교 • 기관/시설	아동/청소년	학습지도, 놀이활동, 프로그램보조 등	5시간 /1일
	장애인	재활서비스보조, 말벗, 식사보조, 놀이활동 등	
	노인	말벗, 외출보조, 식사보조, 도시락배달 등	
	병원	호스피스, 접수안내, 사무보조 등	
	도서관	안내, 도서정리, 업무보조 등	
	학교	학습부진아지도, 특별활동지도, 학습보조 등	
	박물관	안내, 상담, 홍보, 업무보조, 청결유지 등	
	지역축제	안내, 활동보조 등	
NGO	캠페인	교통, 환경, 기아 등의 캠페인참여 및 스텝	5시간 /1일
	국내봉사	행사보조, 사무업무보조, 번역 등의 국내봉사	
	해외봉사	단기 해외봉사활동	지도교수 개별심사
헌혈활동	헌혈증서 기증 (총 3회까지 인정)	4시간 /1회	
재능기부	공연, 페이스페인팅, 벽화봉사활동, 음식 나누기 활동 등	5시간 /1일	

(별지1호)

## 봉사활동 확인서 (교내용)

봉사자	소 속	청강문화산업대학교 _____ 전공			
	학 번		성 명		
봉사활동 내용		교내봉사활동 인정시간은 1일 2시간 인정을 원칙으로 함. 활동평가(담당자 평가) : A(100), B(80), C(60), D(40) 표기			
활동기간	활동시간	봉사활동 내용	활동평가	해당부서	담당자
위와 같이 상기 학생의 봉사활동을 확인합니다.  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 지도교수 : _____ (인)					
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					

## 봉사활동 확인서 (교외용)

봉사자	소속	청강문화산업대학교 _____ 전공		
	학번		성명	
	주소		연락처	
봉사 기관	기관명			
	소재지			
	담당자			
	연락처			
※ 교외봉사활동 인정시간은 1일 최대 5시간 인정을 원칙으로 함				
봉사활동기간		활동시간	봉사활동 내용	
. . . ~ . . .				
. . . ~ . . .				
. . . ~ . . .				
. . . ~ . . .				
<b>담당자 평가 및 의견 (해당점수에 ○ 표시)</b> ※ 평가기준 : 성실성, 봉사정신, 만족도 등 고려하여 평가 단체봉사인 경우 종합적으로 평가			<b>A(100), B(80), C(60), D(40)</b>	
위와 같이 상기 학생의 봉사활동을 확인합니다.  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 기관명 (단체명) : _____ (직인)				
<b>청강문화산업대학교    총장    귀하</b>				

(별지2호)

# 사회봉사활동 보고서

## 1. 학생 정보

과 목 명	봉사활동	전 공		학 번	
성 명		총 시간	_____ 시간 (교내 :     / 교외 :     )		

## 2. 봉사활동 내용

구분 (교내/교외)	봉사일자	인정시간	활동내용	봉사기관	활동평가
합 계 :		시간	평가 평균점수		



## 3. 봉사활동 소감

봉사일자	~
활동소감	
봉사일자	~
소감	
봉사일자	~
소감	
봉사일자	~
소감	

상기와 같이 사회봉사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성명: \_\_\_\_\_ (서명)

최종평가	P / F	지도교수	(인)
------	-------	------	-----